

2025년「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」입주기업 모집 공고

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(예비)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5일
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1 모집 개요

- 모집기간: 공고일 ~ 2025. 10. 13.(월)
- 모집규모: 2개사 ※ 모집기간 내 퇴거 기업 발생 시 모집 규모는 별도 될 수 있음
- 입주기간: 1년 ※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
- 입주시설: 울산벤처빌딩 4층,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(남구 옥현로 129)

2 모집 세부 내용

- 신청자격: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
- 신청대상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1인 창조기업
 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,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
 -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
- 자격여부 확인 및 정회원 신청
 - 창업넷(K-startup.go.kr) → 사업소개 → 시설·공간·보육 →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→ 사업상세 ([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](#) → [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정회원 신청하기](#))

*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

울산광역시

울산광역시

*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여부를 검토 요청할 지역 및 센터 1개 선택

*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여부는 선택한 센터에서 확인합니다.

※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는 위와 같이 "**울산광역시**"로 지정해야 함

결격사유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- 중복수혜자(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)
※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3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,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(기업)
- 현재 휴업중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현재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(기업)
-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○ 선정취소: 예비창업자 중 입주 6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

※ 단,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

3 지원내용

○ 인프라 지원

- 1인 사무공간, 책상, 의자, 캐비닛, 인터넷 무상제공
- 교육실, 회의실, 멘토링실, 휴게실, 탕비실 등 공용공간 사용 지원

○ 사업화 지원

- 온·오프라인 교육, 세미나, 워크숍 참여지원 및 지원사업 정보제공
- 1:1 전문가 자문 컨설팅 및 수요 맞춤형 선택형사업 지원
- 입주(졸업)기업 및 타 기관 간 네트워킹, 협업 등 사업 연계 지원



센터(울산벤처빌딩 4층)



입주공간



멘토링실



회의실(5층)



회의실(4층)



교육실

4 선발 및 심사

○ 선발기준: 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평가 및 선발

※ 선정된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·창업프로그램에 50%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, 50% 미만 참여 입주기업은 연장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심사항목 및 배점

평가분야	세부 평가항목	배 점
창업자 역량 (30)	1-1.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	20
	1-2.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	10
사업계획의 적정성 (20)	2-1.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	10
	2-2. 기술(제품)의 차별성	10
기술성 (20)	3-1. 기술(제품)이 미치는 파급효과	10
	3-2. 기술구현의 현실성	10
시장성 (20)	4-1.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	10
	4-2.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	10
기타 (10)	5-1.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	5
	5-2.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	5

가점사항		배 점
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*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		1
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		1
재창업기업	성실경영평가 통과자	1
	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(우수성실경영자)	3
※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		

5 추진일정

접수기간	서류심사	면접심사(발표)	최종결과(공고)	계약 및 안내
공고일 ~10/13(월)	10/15(화)	10/30(목)	10/31(금)	11/5(수)

※ 서류심사 합격 시 면접심사 전 발표평가 PPT자료 제출(자유양식 / 발표 7분, Q&A 8분)

※ 상기 일정은 모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 접수 및 제출서류

- 접수방법: 전자우편 접수(spring813@ubpi.or.kr)
- 제출서류 ※ [붙임] 서식집 참고

필수 제출서류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	비 고
① 입주신청서 1부	지정양식
② 사업계획서 1부	
③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	
④ 입주서약서 1부	
⑤ 대표자이력서(사진포함) 1부	자유양식 가능
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	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
⑦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⑧ 창업지원포털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 정회원 가입확인서 1부	K-Startup 창업지원포털
⑨ [창업에듀]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패키지과정(20시간) 수료증 1부	창업에듀
⑩ 사실증명원(총사업자 등록·폐업 내역) 1부	홈택스
⑪ (기 창업자)사업자등록증 1부 / (예비창업자)주민등록등본 1부	홈택스 / 정부24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/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됨

7 유의사항 및 문의처

- 유의사항
 -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 - 심사위원회 구성, 신청자 평점 등 평가 관련 사항은 일체 공개 되지 않음
 -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는 공고 및 개별 통보함
 -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석함
- 문의처

소 속	부 서	담당자	연락처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창업지원부	정새봄	052-283-7173

붙임 서식집 1부. 끝.

[참조 1] 1인 창조기업 인정 범위

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

① 1인 창조기업의 개념

- (정의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- (유예기간)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- * (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)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확인 <별첨3 참조 >

③ 1인 창조기업 자격 여부 확인 증빙자료 출력 방법

- www.k-startup.go.kr > 사업소개 > 시설·공간·보육 >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- 사업상세 >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>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(정회원 승인요청 센터는 “**울산광역시**”로 지정) > 정회원 승인(시스템 담당자 / 시간 소요)
- 인증서 출력 : <https://www.k-startup.go.kr:9443/cntusr/memb/biz/createView.do>

시설·공간·보육

대한민국 창업포털 K-Startup에 로그인을 하시면,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URL 복사

총 125 건



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



G벨리 창업큐브



K-콘텐츠 청년창업 지원사업



강동구 청년해냄센터

● 사업상세



지원대상 **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**

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
*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.

* 1인 창조기업이란? **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**

* 정회원 온라인 신청완료 후 만드시 신청한 센터에 연락하여 정회원 승인요청, 승인여부 최종확인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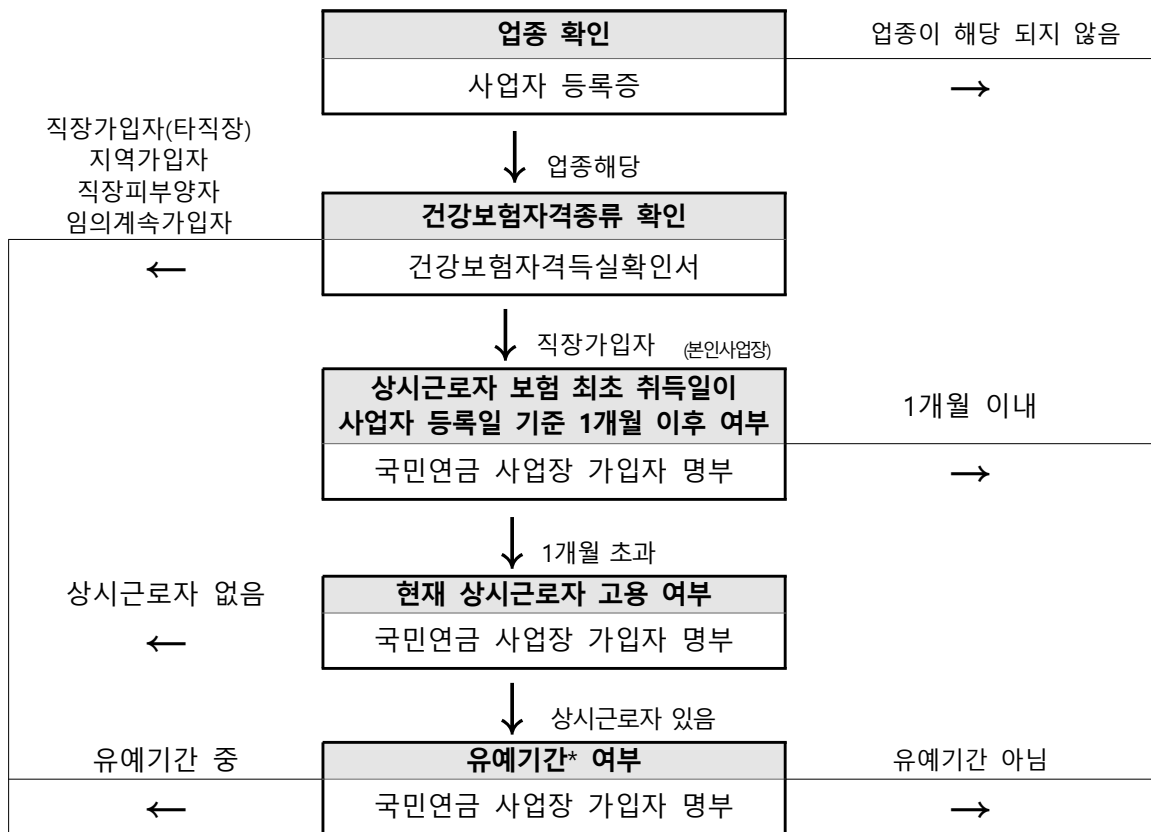
1인 창조기업이 아니며, 센터에 내 어조하이 미 사 니그르프 성부 하이

[참조 2] 1인 창조기업 확인 절차

1인 창조기업 확인 절차

- ◆ **업종 확인** :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,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
*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
- ◆ **상시근로자 확인**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(타직장),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, 직장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- ◆ **유예기간** :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*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

<준비서류>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



※ 유예기간 판단 참고

1. **유예기간** :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임
2. **유예기간 종료 후** :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,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,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
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. 다만, '18.3.1~'18.3.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, '18.4.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, 재유예기간은 '18.4.1~'21.12.31까지임

지원대상

지원대상 아님

[참조 3]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

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
1. 광업	가.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	05
	나. 금속광업	06
	다. 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	07
	라. 광업지원서비스업	08
2. 제조업	가. 담배제조업	12
	나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다. 1차 금속 제조업	24
3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가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35
	나. 수도사업	36
4.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가.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37
	나.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	38
	다.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5. 건설업	가. 종합건설업	41
	나. 전문직별 공사업	42
6. 도매 및 소매업	가.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	45
	나. 도매 및 상품중개업	46
	다. 소매업; 자동차 제외 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	47
7. 운수업	가.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	49
	나. 수상 운송업	50
	다. 항공 운송업	51
	라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8. 숙박 및 음식점업	가. 숙박업	55
	나. 음식점 및 주점업	56
9. 금융 및 보험업	가. 금융업	64
	나. 보험 및 연금업	65
	다.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66
10. 부동산업 및 임대업	가. 부동산업	68
	나. 임대업; 부동산 제외	69
11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가. 보건업	86
	나. 사회복지 서비스업	87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
13.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(1자리 코드), 중분류(2자리 코드), 소분류(3자리 코드), 세분류(4자리 코드), 세세분류(5자리 코드)로 구성되며,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"05(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)"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 업종으로 구분됨